##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1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최연숙・인재근・권은희

김승수 · 한무경 · 김상훈

윤두현 • 이태규 • 윤희숙

권영세・김석기・金炳旭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이나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코로나19의사태만 보더라도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환자, 확진과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당사자와 가족, 지인은 물론 의료진 등 방역인력들도 극도의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

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 2제3항 등).

법률 제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트라우마 환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을 "심리평가, 심리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로,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하다.

-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 3.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 여했던 사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	설치 • 운영) ①
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u>에 해당하는 사람</u>
<u>환자</u> 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	
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	
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u>.</u>
<u>&lt;신 설&gt;</u>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
	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u>&lt;신 설&gt;</u>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
	<u>주</u>
<u>&lt;신 설&gt;</u>	3.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
	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
	무에 참여했던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②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트라우마 환자</u> 에 대한 <u>심리</u>	2.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상담</u> , 심리치료	<u>해당하는 사람심리</u>
	평가, 심리상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트</u>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그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u>국가트라우</u> <u>마센터</u>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4</u>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u>트라우마센터</u>
<u>⑤</u> 제4항까지에서-
<u>국가트라</u>
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